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700019
신청인: 한솔텔레콤주식회사
피신청인: 김용국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한솔텔레콤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1 KTF빌딩 13층

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9-6 용전빌딩 3층

피신청인: 김용국,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9-56

분쟁도메인이름은 “hansol.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사에덴터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7년 6월 29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7월 10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7년 7월 10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7년 7월 11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7년 7월 12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2007년 7월 18일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7년 8월 7일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07년 8월 7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7년 8월 8일 전자우편으로 답변서미제출통지를 하였다.

2007년 8월 9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3인 조정부로서 신청인의 후보자 중에서 황보영 조정위원, 센터에서 서정일 조정위원, 한상욱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7년 8월 9일부터 2007년 8월 10일까지 각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정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07년 8월 10일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07년 8월 16일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한솔그룹은 제조업은 물론 IT 및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 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은 SW 개발 및 정보통신사업 등 그룹내의 IT 아웃소싱에 대한 제반 업무와 한솔 도메인이름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기에, 한솔그룹의 모회사이자 “한솔” 및 “HANSOL” 상표권자인 한솔제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위임을 받아 조정신청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인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한솔그룹에서는 그룹의 상호이자 상표 및 서비스표를 그룹내 주요 사업이나 대부분의 상품구분에 등록하여 그 상표권 및 서비스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분쟁도메인이름 <hansol.com>을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명의로 “HANSOL”을 대한민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지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중요부분이 한솔그룹의 등록상표인 “HANSOL”의 식별력 부분과 유사 또는 동일하여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호 등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또는 동일하고, 피신청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이 도메인 등록을 하였으나 이를 어떠한 사업에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그룹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 “HANSOL” 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 “hansol.com” 을 비교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com” 을 제외한 “hansol” 과 한솔제지의 등록상표인 “hansol” 은 그 요부가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된 바도 없고, 기타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일응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할 것이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우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이는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상표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떤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HANSOL” 이라는 명칭이 주요 부분으로 포함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사실에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 는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 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 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인 <hansol.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서 정 일
주조정인

한 상 옥
부조정인

황 보 영
부조정인

결정일: 2007년 9월 3일